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1. . .	
연월일	(제 회)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기획감사실장)
제출 연월일	2021. . .

법무통계담당 심사필

#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1. . .

제출자 : 고령군수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20조(‘22.1.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들이 규칙에 개정 등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 나. 군수의 책무(안 제2조)

○ 고령군수는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안요구 등(안 제5조 ~ 제8조)

- 의견제출서 제출 방법
- 보안요구 방법
- 의결제출 검토
- 의견 반영

### 라. 차별대우 금지(안 제9조)

○ 의견제출 주민에 대하여 차별대우 금지 및 불이익조치 금지

##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29조

나. 예산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1. 11. 3. ~ 11. 22. 기간 중 의견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 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제출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0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span style="float: right;">[    ] 대표자</span> <span style="float: right; font-size: small;">※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span>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000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00000장    귀하

〈 소관 부서명 〉

고령군 기획감사실	
연 락 처	054-950-6052